의안번호	2217091
의 뢰 인	윤영석의원
회 답 일	2026.8.26.
추계번호	26D1140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0조 (양로·요양 지원)	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(자녀는 제외한다)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(다만, 특수임무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, 여성은 55세 이상) 중 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없는 자(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・운영하는 양로・요양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음. (제1항)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・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・운영하는 양로・요양시설 외의 양로・요양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,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(제2항)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70조(양로·요양지원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❑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(자녀는 제외한다)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(다만, 특수임무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, 여성은 55세 이상)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에게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○ 또한,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이 필요할 경우,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○ 현재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를 포함한 보훈대상

자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보훈원에서 양로지원을 하고 있음

[표 1] 수원보훈원(양로시설) 입소 현황

(단위: 명)

성별	정원	현원	본인							유족			
			소계	독립	국가	5.18	특수	고엽제	참전	소계	배우자	부모	㈜자녀
남	215	40	36	1	22	-	-	2	11	4	-	1	3
여		60	3	-	-	-	-	-	3	57	54	1	2
계		100	39	1	22	-	-	2	14	61	54	2	5

자료: 국가보훈부

❑ 또한,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, 부모 중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[표 2]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지급대상별 요양지원보조 비율

보훈대상자	지급대상	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조비율
ㅇ 독립유공자 ㅇ 전상·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ㅇ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특수임무부상자	ㅇ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ㅇ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ㅇ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	80%
ㅇ 무공·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공로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ㅇ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ㅇ 특수임무공로자 ㅇ 독립·국가·5·18민주·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(참전유공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) ㅇ 국가·5·18민주·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 부모	ㅇ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	40%
	ㅇ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ㅇ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	60%
ㅇ 참전유공자 ㅇ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	ㅇ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ㅇ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	60%

자료: 국가보훈부

❑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양로·요양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, 지

원시설 대상을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양로·요양시설로 확대하였음

○ 또한, 개정안은 양로·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・운영하는 양로・요양시설 외의 양로・요양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,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❑ 개정안에 따라 요양지원을 할 경우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지원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, 위탁받은 양로·요양시설에서 양로·요양지원을 받을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❑ 다만,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요양지원 대상자의 수, 대상자 중 요양지원을 받을 사람의 비율 및 지원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부재하여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❑ 해당사항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